

전자금융서비스 업무제휴 계약서

(가상계좌 업무제휴 계약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갑"이라 한다)과 xxxxxx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전자금융서비스 업무제휴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가상계좌를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한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제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업무내용)

이 계약에 의해 처리되는 가상계좌의 사용용도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상계좌의 사용용도

<간단히 기재 요망>

2. 업무의 범위

입금업무: "을"의 고객에게 부여한 "을"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을"이 지정한 모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와 입금명세의 전송업무

제 3조(업무처리 및 자금정산시간)

- 업무처리 시간은 24시간/일, 365일/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갑"이 실시하는 마감업무 및 시스템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처리시간으로 간주한다
- 자금정산은 평일기준 1일2회(휴일 1일1회) 실시하며, 정산시간은 <별첨2>의 시간으로 한다. 다만, "갑"의 시스템사정, 경영정책상의 사유등에 의하여 동 정산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

제 4조(모계좌의 지정)

"을"은 "갑"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금모계좌(이하 "모계좌"라 한다)인 예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구 분	예금과목	계좌번호	예금주
입출금 모계좌			

제 5조(입금업무 처리)

-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자원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한정한다.
- "갑"은 "을"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을"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 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을"이 미리 정한 모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 "갑"은 "을"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전산망에 의하여 "을"에게 전송 또는 조회가능하게 지원한다.

- ④ 자기앞수표로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모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가 추심완료된 후에 출금가능하기로 하며, 자기앞수표에 대한 "을"의 인식 및 처리는 "을"의 전산시스템에서 자체 보완하기로 한다.
- ⑤ "갑"이 수납한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을"의 해당 모계좌에서 차감하여 정리한다.

제 6조(입금업무처리의 예외)

"갑"이 입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상계좌 또는 모계좌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

제 7조(거래내용의 확인)

- ① "갑"과 "을"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의 확인사항 중 "갑" 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결과의 전송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처리결과의 전송내용과 실제 처리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을"에게 별도 통지 한다.

제 8조(거래의 취소)

"갑"이 전산처리한 내역 중 "갑"의 전산시스템 오류, 이중입금이나 오조작 등에 따른 오류에 한하여 "갑"은 "을"에게 동 거래의 취소 및 정정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조(수수료)

- ① 수수료의 산정 및 징구기준은 붙임의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기준표"를 적용한다.
- ②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갑"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며 "을"은 변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15일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사실을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단, 시행일 15일전까지 이에 대한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③ 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을"의 모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절차없이 자동인출한다.

제 10조(효력 및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그 기간은 "갑"이 "을"에 대하여 본 금융서비스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감독행정기관의 승인(인,허가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승인이 있는 날부터 발효한다.
- ②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해지요청이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1조(계약해지)

-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1. 상호간에 서면 합의한 경우
 2. 계약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상대방이 파산, 화의, 회사정리, 기업개선약정을 신청 또는 체결하거나,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관리인 등이 선임되는 등 신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4. "갑"과 "을"은 각각의 경영정책상의 사유, 관련법령의 제·개정, 금융감독기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나,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본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기타 "을"이 "갑" 또는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금융관계 법규위반 등으로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에 서면통지로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전항 2호인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보 1개월 후에는 해지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경우에 "을"은 붙임의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기준표"에 의한 미지급액을 포함한 총 잔여 수수료를 해지와 동시에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 12조(전산운용)

이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전산운용사항은 "갑"과 "을"의 실무담당 부서장이 따로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 13조(기밀유지)

- ①"갑"과 "을"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기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제 14조(손해배상책임)

- ①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제 의무위반,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②고객에 대한 분쟁 및 민원에 대해서는 신의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제 15조(신의성실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 16조(준용사항)

본 전자금융 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가상계좌 및 모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갑"의 수신거래 기본약관과 당해 모계좌의 거래약관을 준용하며, "갑"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CD공동망, 전자금융망, 타행환공동망 등)의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 17조(기 타)

- ①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호 합의 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②이 계약업무 진행 중에 감독행정 기관(유관기관 포함)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해 관련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 ③"갑"의 사유가 아닌 타행등의 이의제기로 인한 금융공동망 사용불능등의 금융환경의 변화에 의한 사유로 서비스가 불가능할 때 "갑"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제 18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갑"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5 년 월 일

갑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은행장 김종열

을 :